

제 1872 호
1987. 6. 29

서울특별시
700-4537

시 보

환 권

◎ 조 례

제 3195 호 : 서울특별시본청규정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배분
개정조례

일															
월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령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본청 홈페이지에서 영문본을 읽는다.

서울특별시

조

주부총리회 승인을 받은 서울특별시
본청구립중학교교육원등의 지방공
무원 직위보정등 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1987. 8. 20

서울특별시장 김보연

◎서울특별시조 제 2195 호

서울특별시립구립중학교교육원등의
지방공무원직위보정등개정조례
서울특별시 본청구립공무원교육원등

의 지방공무원 직위보정등
등이 개정한다.

(별표 1) 본청 지방공무원정원표
중가. 일반직 4급정원 "12"을 "22"
로 하고, 직급내용에 행정, 특수,
건축, 생활 또는 공업의 10(교육정
원)을 신설한다. 5급정원 "213"을
"223"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
직 "147"을 "157(교육정원 10)"
로 하며 합계정원 "1,687"을
"1,707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